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. 11. 13 선고 2015가단29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영동새마을금고

피고A

변론 종결2015. 10. 16.

판결 선고2015. 11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B 전 660m² 지상 별지 '부동산의 표시'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별지 '청구원인' 목록의 해당 기재와 같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

2. 판단

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서 별다른 권한 없이 위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소유함으로써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,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이해빈

별지